

##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의안 번호	3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0. 18  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제77조, 동법시행령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코자함.

### 2. 주요골자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사 업 명	구분	소재지	면 적 (규 모)	지 목 (구 조)	시설 개요 (용 도)	소요예산
괴정2동사 신축	계		529 (160평▷ 지상1·2층 각 80평)	RC 스투브	· 1층 민원실 및 사무실 · 2층 주민자치 센터 (회의실), 중대본부등	451,000
	건물	괴정동354- 22번지외1 필지	529 (160평▷ 지상1·2층 각 80평)	RC 스투브	· 1층 민원실 및 사무실 · 2층 주민자치 센터 (회의실), 중대본부등	451,000

### 3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

## 괴정2동사 신축계획

### 1. 취득사유

- 현 동사가 '70년도 건립된 노후 건물로 사무실 및 회의실 공간협소와 주차공간 절대부족 등으로 대주민 행정서비스 기능강화와 원활한 주민자치 센터 운영을 위한
- 동사 신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장래 증가하는 행정 수요 등에 대처코자 공유재산 취득(동사신축) 코자 함.

### 2. 취득대상 재산내역

(단위:m<sup>2</sup>,천원)

재산의 표시	건축물			소요 예산
	구 조	시설 개요	면적(평)	
계	RC 스라브		529 (160평)	451,000
괴정동 354-22 외1필지	RC 스라브	· 1층 민원실 및 사무실 · 2층 주민자치 센터 (회의실), 중대본부등	529 (160평)	○ 총사업비 : 451,000 (평당 2,810) · 시설비 : 437,000 - 설계 용역비, 건물 철거·처리비, 전기,통신(전산)설치등 포함 ※ 설계용역비 : 12,000 ※ 건물 철거·처리비 : 25,000 · 감리비 : 11,000 · 기타부대비 : 3,000

※ 자산취득비 (사무실 비품, 집기류등)별도 洞 예산편성 확보

### 3. 추진계획

- 기본계획 입안(동사 부지매입 및 신축 계획) : 2001. 4~5월
- 공유재산 취득승인(부지취득) : 2001. 4. 30
- 투자사업 심사 : 2001. 5. 30
- 동사부지 매매 계약 체결 : 2001. 10. 16
- 동사신축 : 2002. 2~6 ▷ 착공일로부터 100일간

### 4. 검토의견

- 대주민 행정서비스 기능강화와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동사 신축을 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향후 행정수요 등에 대처코자 공유재산(동사 신축)취득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됨